

#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 금 태 의원)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. 20.

발 의 자: 이금태·정영수·이규근·  
오연환 의원

## 1. 개정이유

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인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과 미혼모의 산전·산후 관리 등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(안 제5조)
- 나.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에 따른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 외)

## 3. 개정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, 제4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4, 제17조의6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함으로써”를 “규정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교육지원 사업”을 “교육 지원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

8. 미혼모의 산전·산후 관리 등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

제6조제2항 중 “연령”을 “나이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전출한”을 “옮겨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전부 또는”을 “전부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한부모가족지원사업”을 “한부모가족 지원사업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아동의 양육 및 <u>교육지원 사업</u></p> <p>2. ~ 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, 가족구성,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7조(지원의 중지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교육 지원사업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</u></p> <p>8. <u>미혼모의 산전·산후 관리 등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사업</u></p> <p>9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나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의 중지) ----- -----</p>

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.

- 1.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,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
- 2. 3. (생략)

제10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

제11조(예산의 확보) 구청장은 한 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.

- 1. -----  
----- 옮겨간 -----
- 2.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부 또는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-----  
--.

제11조(예산의 확보) -----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-----  
-----  
-----.

## 관련 법령

### 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모” 또는 “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1의2. “청소년 한부모”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2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“모자가족”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“부자가족”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

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5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6. “지원기관”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7. “한부모가족복지단체”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**제17조의2(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  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 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  4.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17조의4(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·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자립 지원의 신청,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6(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(産前)·분만·산후(産後)관리,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